

의안 번호	2280	<b>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0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30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6. 11.(화)

### 2. 제안이유

-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목적·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안전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, 계속 존치해야 하는 법령상 명시 등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 조례의 일괄 개정 필요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존속기한 설정
- 나. 위원회 비상설 운영 조항 추가 및 상설 운영 관련 조항 삭제

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 및 제16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 조례의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큰 거 법 규

###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**제15조(위원회 관리 및 정비)** ⑤ 담당부서의 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, 조례 등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
**제16조(위원회 존속기한)**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검토하고, 기한 연장 결정시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.